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11
----------	-------

발의연월일 : 2026. 4. 29.

발 의 자 : 강선영 · 김정재 · 김용태  
유용원 · 서지영 · 백종헌  
최수진 · 구자근 · 임종득  
박정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은 10년 간의 의무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해군 또는 공군 장교로서 비행훈련 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하고, 이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음.

이에 따라 회전익항공기는 현대 전장에서 고도의 정밀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핵심 전력으로서 조종사 양성에 장기간의 교육·훈련과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인력이 가장 활발히 임무를 수행해야 할 시기에 민간 분야로 유출되는 등 전력 손실과 국가 재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전익항공기 비행 자격을 취득한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13년으로 상향함으로써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를 “장교”로, “취득한 사람[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 “졸업한 사람”을 “졸업한 사람[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제5호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13년으로 하고, 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전익항공기 장교 및 비행자격 취득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 중 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회전익항공기 기종의 비행훈련과정을 지원하는 사람부터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6.·7. (생략)

② ~ ⑥ (생략)

----- . ----비행훈련 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13년으로 하고, 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6.·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